

# 독일산업재산권 전문가 초청세미나

본회는 10월 30일 오후 3시에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독일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보시우스 박사를 초청하여 “독일 특허법원의 운영과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李斗星 記>

## 독일연방 특허 법원의 기능 및 운영실태

### 1. 배경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1961. 7. 1. 설립되었다.

종전에는, 독일 특허청의 항고 및 취소심판소에서 특허 등에 관한 항고 및 취소심판을 취급하였으나, 동 심판소가 특허청과 밀접한 종속성을 갖기 때문에 독립된 심판기관이라 볼 수 없다는, 독일 연방 행정 법원의 1959년도 결정에 따라, 동 심판소가 폐지되고 연방 특허 법원이 발족되었다.

### 2. 연방 특허 법원의 기능

연방 특허 법원은 연방 법원의 하나로서, 산업재산권법 관련 쟁송을 담당하며, 항고부와 취소부(무효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능은,

- a) 독일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심사국의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
- b) 특허/등록 무효 소송,
- c) 강제 실시권 허여 소송,
- d) 식물변종에 대한 등록담당국의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사건을 심리한다.

### 3. 연방 특허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절차

가. 일반사항 :

연방 특허 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신청(Petition)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직권 탐지 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파악 및 증거조사 등을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항고부에서의 변론은 공개된다. 판결은 재판관의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항고부에서는, 특허국의 사정에 대한 항고가 적법한 것인가를 우선 심리한다(특허청의 사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적법한 것이다).

항고장은,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관납료도 규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한 직권 탐지 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적으로는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에 항고장이 제출되면, 특허청은 당해 출원을 재심사한다(심사전치제도).

심사전치는 사정불복건에 대하여만 행해지고, 이의 신청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은 즉시 특허 법원으로 이관된다(항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 중의 어느 한쪽에서 증거채택에 필

요하다고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 심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이 행해진다.

특허법원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안 심리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a) 특허청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
- b) 특허청에 대한 절차 진행이 실질적으로 잘못 되었을 때,
- c) 판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 경우, 연방 특허 법원은 특허청으로 하여금 동 사안을 더욱 심리케하기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허무효를 제기할 수 있다.

- a) 특허 대상물이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
- b) 특허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완벽하게 개시되지 않은 경우
- c) 특허의 필수구성요소가, 타인의 기구, 장치, 모형, 도면, 서면 기재사항, 또는 타인에 의해 사용된 방법 등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채택된 경우,
- d) 특허의 대상물이, 최초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경우,
- e) 특허의 보호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독일특허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참조).

특허 무효소송은, 당해 독일 특허 출원 또는 독일을 지정한 유럽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의 계속 중, 또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 기간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사정불복 항고 절차와는 달리, 무효 소송에서는 반드시 소송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피고측에는 1개월의 답변기간이 부여되고, 동 기간내에 답변이 없으면 원고측의 모든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내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통보하고, 심리후 판결한다.

나. 실무사항 :

항고장은, 사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관납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항고에 의해 정지 효과가 발생한다.

청구의 범위의 보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고 이유는, 구두 변론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 이유는, 거절사정시에 이미 언급되었던 사항으로서, 항고인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항고심리에 있어 특허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 및 사실주장 등에 구속됨이 없이, 당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 4. 연방 대법원예의 상고

가. 무효소송

특허법원 무효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실판단 및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는 양 경우에 모두 상고 가능하다.

새로운 사실 및 증거의 제출도 가능하다.

상고장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연방 특허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고장에는 상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실 및 증거도 상기 기간내에 제출함이 바람직하다.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사실 및 증거는 배척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연방 특허 법원의 사실판단이나 양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됨이 없이 임의로 사실판단을 행한다.

구두 변론을 행한 후 최종 판결한다.

나. 항고소송

연방 특허 법원 항고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가능하다.

대법원은 연방 특허 법원의 사실판단에 구속되고, 단지 법률적용의 잘못유무만을 심리한다.

구두 심리 없이 판결할 수 있다. <♣>